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15
----------	------------

제안일자 : 2021년 3월 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임무와 교육·훈련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가입과 관련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험가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토록 함.(안 제18조제4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1항에 따 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 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 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